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4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기관의 임무 명시(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2
2. 연구회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21조의3 신설 및 제29조)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2.

다.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Ⅲ. 검토의견

1. 연구기관의 임무 명시(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의 설립 근거(별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적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u>연구기관</u> 은 별표와 같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 ----- <u>연구기관과 임무</u> 는-----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연구기관의</u>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연구기관의</u> ----- ----- -----.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임무(제8조제1항 관련)

연구기관	임무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분석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을 하는 연구기관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을 하는 연구기관

연구기관	임무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서비스하고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첨단정보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연구기관
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지원을 하는 연구기관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기관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11.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을 하는 연구기관
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변화 대응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
13. 한국기계연구원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하는 연구기관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
15. 한국전기연구원	전력 및 전기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연구기관
16.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17.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 연구기관
18. 한국재료연구원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하는 연구기관
1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

나. 검토의견

출연연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출연연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하여 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사명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사한 설립 구조를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경제인문사회 분야)¹⁾ 등 타 정부출연기관 관련 법령에서도 개별 기관의 구체적 임무를 법률 본칙이나 별표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통상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임무는 기관별 정관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술 패권 경쟁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출연연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유연한 임무 범위의 확장이 요구될 수 있음. 그러나 임무를 법률(별표)에 규정할 경우, 임무 변경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이 필요할 때마다 법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자율성과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임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이 아닌 정관이나 중장기 기본계획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및 다학제·융합연구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관의 임무를 법률에 규정하면 기관 간 협력 및 협동연구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기관별 정관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이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하 “연구회”라 함)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기관의 임무 변경(추가, 삭제, 수정 등) 사항을 법령에 적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연구회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21조의3 신설 및 제29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연구회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

현행	개정안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 ③·④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연구기관의----- ----- -----.

나. 검토의견

현행은 연구회가 출연연의 설립·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중장기 전략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임. 실제 현장에서도 출연연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별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출연연이 국가 R&D의 핵심인데도 개별 기관별 계획에만 치중되어 국가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이 연구회로 하여금 출연연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아우르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은 출연연 운영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전략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 연구기관의 역량을 국가 전략기술 확보 등 범국가적 과제에 집중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예산과 사업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현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2)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수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차.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파.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거.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제시된 연구회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6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부 차원의 주요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기구³⁾임. 이러한 체계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인 연구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그대로 심의하는 것은 심의 기구의 성격이나 절차적 형식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로, 통상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및 중합계획은 중앙

나.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더.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머.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부처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⁴⁾임.

따라서, 이러한 자문회의의 현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본계획의 성격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연구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연구회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⁵⁾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과학

4)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기술기본계획, 성과평가기본계획 등은 정부 부처의 고유 역할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7

-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